

수원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1가단5801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(담당변호사 김철, 이한진)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대근

피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(담당변호사 김현수)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경북 영천시 B 임야 40760m²중 12330분의 8330 지분에 관하여,
 - 가.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19. 9. 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 - 나.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9. 9. 6. 접수 제230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.

나.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(이하 'C'라고 함)의 요청으로 C가 주식회사 D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, 그 약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고(아래 1차 보증의 보증기한은 2020. 9. 18., 보증금액은 8,100만원으로, 2차 보증의 보증기한은 2020. 8. 28.로 각 연장 및 변경되었다), C는 각 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2015. 9. 25. 1억원, 기업은행으로부터 2017. 9. 1. 5억원을 각 대출받았다.

순번	보증일자	보증번호	보증금액	대출과목	보증기한	금융기관	연대보증인
1차	2015. 9. 24.	E	90,000,000	기업일반 자금대출	2016. 9. 23.	D	G
2차	2017. 9. 1.	F	450,000,000	중소기업 자금대출	2018. 8. 31.	기업은행	G

다. C는 각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, 기업은행 대출의 경우 2020. 12. 1. 이자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D 대출의 경우 2021. 5. 1. 이자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.

라. 이에 원고는 ① 기업은행에게 2021. 2. 2. 위 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458,777,008원(대출원금 450,000,000원 + 이자 8,777,008원)을, ② D에게 2021. 10. 1. 위 1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48,715,360원(대출원금 47,767,573원 + 이자 1,307,548원 - 차감액 359,761원)을 각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, 2021. 2. 2. 위 2차 보증과 관련하여

3,809,580원을 회수하였다.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503,682,788원(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458,777,008원 + 1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48,715,360원 - 2차 보증관련 회수금 3,809,580원)이고,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4,365,370원을 지출하였다가 110,974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4,254,396원이며, C가 1차 보증관련 미지급한 추가보증료는 34,020원이다.

마. 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507,971,204원(1차, 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503,682,788원 + 대지급금 잔액 4,254,396원 + 추가보증료 합계 34,020원) 이상이다.

바. 이에 원고는 2021. 10. 21. C 및 연대보증인 G(C의 대표자 사내이사)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차전116124호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(2021. 10. 27.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1. 11. 9. 송달되고, 2021. 11. 24. 확정되었다).

2. C는 경북 영천시 B 임야 40760m²중 12330분의 8330 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지분’이라고 함)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, 2019. 9. 3.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억원 한도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계약’이라고 함)을 체결하고,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9. 9. 6. 접수 제230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2억원, 채무자 C, 채권자 피고 ; 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등기’라고 함)를 경료해주었다.

아.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19. 2. 27. 채권자 H의 가압류등기(청구금액 2,500만원, 2019. 2. 27.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684 가압류결정 원인) 및 채권자 I의 가압류등기(청구금액 2,500만원, 2019. 2. 27.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685 가압류결정 원인)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. 원고와 C 사이의 위 각 보증의 약정서 제5조 제1항 2호는 ‘C에 대하여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원고는 사전구상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[증거 : 갑 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, 변론의 전취지]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- 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).
- 2)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,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당시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, 그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H, I이 각 가압류를 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며, 2020. 12. 1. C의 이자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여,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.

나. 사해행위 해당성

- 1)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).
- 2) 위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, 그 가액은 243,211,678원(2017. 7.의 매수가액 360,000,000원 x 8330/12330) 정도인 사실,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 497,000,000원(1차 보증금액 잔액 4,700만원 + 2차 보증금액 450,000,000원), 피고에 대한 채무 139,227,000원, 가압류채권자 H, I에 대한 채무 각 2,500만원, 합계 686,227,00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지분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

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.

3) 그리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,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다. 따라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(악의)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 주장

피고는 C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매입대금 120,000,000원의 반환채권과 물품대금 채권 19,227,000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이러한 거래 및 근저당권설정은 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그 당시 C의 재정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고, 따라서 이는 취소될 수 없다.

2) 판단

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,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).

살피건대, 을 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을 종합하면, 피고는 전기,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,

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태양광발전소 3기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120,000,000원을 지급하였는데, 2019. 3. 29.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C로부터 120,000,000원을 반환받기로 하고, 반환시기는 발전소 3기의 신규계약자가 들어왔을 때로 하되, 반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사실, 또한 피고는 C에게 2018. 3. 15.부터 2018. 9. 13.까지 합계 29,227,000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1,000만원을 변제받아 19,227,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, 피고는 위 120,000,000원의 반환채권과 19,227,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(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대해 이미 2건의 가압류등기가 있었던 점, C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최종 납품일인 2018. 9. 13. 이후 약 1년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, 위 태양광발전소 매입대금 반환을 위한 담보설정도 그 약정일인 2019. 3. 29.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실제 근저당권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),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당시 그것이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9. 9. 3. 체결된 근저당권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,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곽동우